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제438호 2012. 12. 31(월)

선	기 관 의 장
람	

## 조 례

- 진안군 조례 제1988호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진안군 조례 제1989호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4
- 진안군 조례 제1990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진안군 조례 제1991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조례)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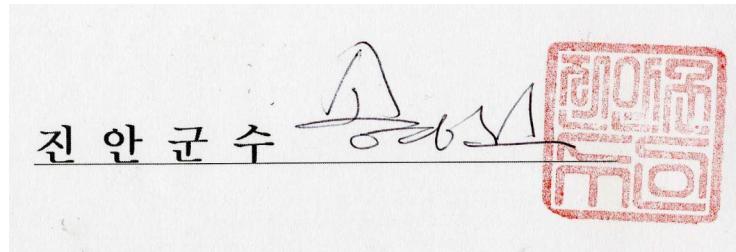
## 공 고

- 진안군 고시 제2012-74호 (국가기초구역 고시) .....45

회									
---	--	--	--	--	--	--	--	--	--

발행 진 안 군 (편집 행정지원과)(063)430-2838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진안군 조례 제1988호

###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군의원(2명)”을 “군의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은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 진안군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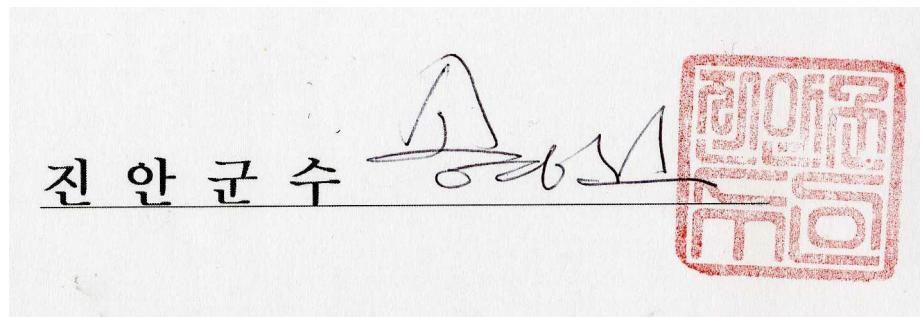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u>*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u>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u>단. 지역조합은 순자본비율(안정성7점)로 평가</u>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 <u>*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u> <u>*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u>	3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18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u>관내지점의 수</u>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u>*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u>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20	(5)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운영 계획	20	(5) (7) (5)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	10	(5) (5)

\*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순위 간 점수 편차는 1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점수편차는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와 5는 순위 간 점수편차가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고지정방법) ① (생 략)	제4조(금고지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전라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 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u>&lt;삭 제&gt;</u>
4. <u>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 재무 구조 안정성 또는 업무 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정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u>&lt;삭 제&gt;</u>
5. <u>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u>	<u>&lt;삭 제&gt;</u>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u>군의원(2명)</u> ,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② ----- ----- ----- <u>군의원</u>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진안군 조례 제1989호

##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사태”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2.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제3조(설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수 소속으로 진안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도표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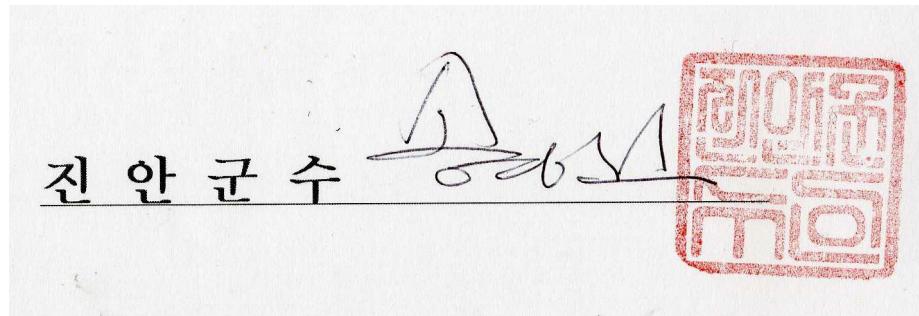
**제1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 진안군 조례 제1990호

###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리에 주민 의사를 일선 행정 반영하고,”를 “행정리의 일선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로 한다.

제6조제2항의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군수”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리의 세대주 중 3/5 이상이 면직을 서면으로 요청한 때  
제18조제2항 중 “회장”을 “이장”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3조(하부구조)</b> ① ~ ③ (생 략) ④ 행정리에 주민 의사를 일선 행정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위원회를 둔다. ⑤ (생 략)	<b>제3조(하부구조)</b>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리의 일선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 - - - - . ⑤ (현행과 같음)
<b>제6조(복무)</b> ① (생 략) ② 이장은 <u>제6조</u> 에 따른 임무수행 시 직무상 행정지시를 따라야 하며 행정운영 일선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b>제6조(복무)</b>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5조</u> - - - - - . ③ (현행과 같음)
<b>제8조(편의제공 및 지원)</b>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제공과 잡부금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b>제8조(편의제공 및 지원)</b> ① - - - - -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b>제9조(이장의 면직)</b>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	<b>제9조(이장의 면직)</b> - - - - -

현 행	개 정 안
<p>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u>주민 대다수가 면직을 요청(해당 리 세대주가 기명날인한 서면요청에 한정한다)</u> <u>한 때</u></p> <p>4. (생 략)</p> <p><b>제18조(구성) ① (생 략)</b></p> <p>② 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추대하며, 간사는 <u>회장</u>이 겸임 한다. 다만, <u>회장</u>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해당 리의 세대주 중 3/5 이상이 면직을 서면으로 요청한 때</u></p> <p>4. (현행과 같음)</p> <p><b>제1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b></p> <p>② -----</p> <p>-----</p> <p>-----</p> <p>-----</p> <p>----- <u>이장</u> -----</p> <p>----- <u>이장</u> -----</p> <p>-----</p> <p>-----.</p>

[별표 2]

## 반(조직) 관할 구역명

읍 면 별	법정리명	행정리명	법명	관할구
진 안	군 상	노 계 1	1	성 모 사 거 리
			2	농 죠 대 일
			3	어 골 영
		노 계 2	1	상 촌 월
			2	하 천 촌 월
			3	못 골
			4	웃 골 새
		노 계 3	1	주공 2차 (201동)
			2	주공 2차 (202-203동)
			3	주공 2차 (204-205동)
			4	주공 2차 (206동)
			5	주공 2차 (207동)
			6	주공 2차 (208동)
		학 천 1	1	반 교 날 동
			2	본 동
			3	중 앙
			4	월 랑
		학 천 2	1	사 날 정
			2	오 골 동
			3	산 총
			4	계 암
		학 천 3	1	질 지 구
			2	쇠 기 정
		우 화 1	1	쌍 교
			2	삼 립
			3	중 앙
			4	우 정 화
			5	한 전

읍 면 별	리 명	행 정 리	반 명	관	할	구
				수	삼	
진 안	군 상	우 화 3	1	차	부	
			2	신	용	
			3	쌍	용	
			4	뒷	골	
		우 화 4	1	상 범	모	
			2	하 범	모	
		우 화 5	1	남 광	1	
			2	남 광	2	
		우 화 6	1	고 향 마 을	101동	
			2	고 향 마 을	102동	
			3	고 향 마 을	103동	
			4	고 향 마 을	105동	
		중 앙 1	1	중 앙 사 거 리		
			2	본	동	
			3	상	뜸	
		중 앙 2	1	숲	거	
			2	주공1차(101-105동)		
			3	주공1차(106-110동)		
		연 구 1	1	본	춘	
			2	신	사	
			3	통	일	
			4	윗	뜸	
			5	건 너	촌	
		연 구 2	1	방 죽 위	춘	
			2	방 죽 밑	춘	
군 하	관 산 1	1	구		세	
		2	우 화		춘	
		3	형		제	
		4	전 매 위		뜸	
		5	전 매 아 래		뜸	
		관 산 2	1	협	동	
			2	호	남	
			3	중	앙	
			4	학 교	동	
			5	원	불	
	대 성	1	천		변	
		2	경		모	

음 면 별	리 명	행 절 리	반 명	관	할	구
				세	무	
진 안	군 하	대 성	3	회	관	
			4	교 육	청	
			5	하 대	경	
			6	상 대	경	
		대 광	1	술	밭	
			2	삼 거	리	
			3	재	실	
			4	숲	의	
		대 광 2	1	새 주	마	
			2	월랑 (101-812호)		
			3	월랑(901-1512호)		
단 양	원 단 양		1	상 전	촌	
			2	하 전	촌	
			3	후	촌	
			4	가 덕	암	
	새 마 을		1	우 측	뜸	
			2	좌 측	뜸	
		건 원	1	건	원	
		외 사 양	1	상	뜸	
			2	하	뜸	
		내 사 양	1	내 사	양	
반 월	원 반 월		1	동	촌	
			2	북	촌	
			3	남	촌	
			4	서	촌	
	외 기		1	외	기	
			2	송	내	
	금 마		1	상	촌	
			2	하	촌	
	산 암		1	고	암	
			2	산	수	
가 림	은 천		1	사 리	구	
			2	중	구	
			3	허	곡	

음 면 별	리 명	행 정 명 리	반 명	관	할	구
				앞	듬	
진 안	가 림	은 천	4	음	지	촌
		탄 곡	1	양		촌
			2	원	가	림
		원 가 림	1	남		촌
		선 인	1	북		촌
			2	상		촌
		사 옥	1	하		촌
			2	암		곡
구 룡	암 곡		1	동		촌
	석 곡		1	서		촌
		예 리	1	전		듬
			2	상		듬
			3	하		듬
물 곡	원 물 곡		1	계		땅
			2	전		촌
			3	하		촌
	궁 동		1	양		듬
			2	곡		동
			3	소 토		실
	종 평		1	상		촌
			2	하		촌
	상 도 치		1	물 방 아		듬
			2	상		촌
	하 도 치		1	하 도		치
죽 산	내 오 천		1	내 오		천
	어 은		1	중		리
			2	하		촌
			3	상		촌
오 천	평 촌		1	석		현
			2	평		촌
	외 오 천		1	웃		담
			2	아 랫		담
			3	석		동

음 면 별	리 명	행 정 명	리 반 명	관 할 역	구
진 안	오 천	양 지	1	양	지
			2	동	구
	가 막	상 가 막	1	상	가 막
			2	사 옥	동
		하 가 막	1	하	가 막
정 곡	활 인 동		1	활	인 동
	개 실		1	개	실
	정 주		1	동	반
			2	서	반
연 장	상 평		1	원	상 평
			2	강	촌
	중 평		1	상	촌
			2	하	촌
	하 평		1	상	촌
			2	하	촌
	부 곡		1	상	뜸
			2	하	뜸
	용 지		1	용	지
	대 연 장		1	대	연 장
	대 성		1	구	대 성
			2	취 락	촌
			3	관	암
	원 연 장		1	음	지 뜸
			2	양	지 뜸
운 산	구 운		1	상	담
			2	하	담
	신 흥		1	신	흥
	유 산		1	음	지 촌
			2	방 죽	촌
	검 북		1	검	북
	송 대		1	송	대
	언 건		1	상	뜸
			2	중	뜸
			3	하	뜸

음 면 별	리 명	행 정 명 리	반 명	관 할 구 역
진 안	운 산	외후사동	1	외 후 사 동
		내후사동	1	내 후 사 동
소 계	13	69	176	
용 담	옥 거	옥 거	1	당 메
			2	가 는 골
			3	선 화 교
	수 천	수 천	1	사 천
	와 룡	와 룡	1	신 정
			2	고 무 동
			3	선 화
	호 계	호 계	1	대 성 동
	월 계	월 계	1	월 계
			2	와 정
	송 풍	왕 두 골	1	왕두골 (과수원포함)
		옥 수	1	옥수(돼지마을~휴게소)
		회 룡 1	1	양 지
			2	음 지
		회 룡 2	1	아 랫 담
			2	순 복 동
		문화마을	1	문 화 마 을
		방 화	1	매 골
			2	방 아 실
	중 앙		1	중 앙
	노 온		1	양 지
			2	음 지
			3	새 발 촌
		새 마 을	1	새 마 을
		감 동	1	감 동
소 계	6	15	25	
안 천	백 화	율 현	1	웃 담
			2	아 랫 담
		구 례	1	웃 담
			2	아 랫 담
		상 리	1	샘 담
			2	안 담
		중 리	1	아 랫 담
			2	윗 담
		교 동	1	원 중 리

음 면 별	리 명	행 절 명	반 명	관	할	구
				가	장	
안 천	백 화	하 리	1	당	산	
			2	도 라	곡	
	노 성	보 한	1	동	산	
			2	오 약 고 개		
		직 동	1	핏	꼴	
		시 장	1	정 류 소		
			2	다 박 솔		
		안 기	1	안	터	
		노 체	1	하	노	
			2	원	노	
			3	상	노	
	신 괴	괴 정	1	샛	담	
			2	원 괴 정		
			3	상	곡	
		지 사	1	외	촌	
			2	내	동	
			3	곡	촌	
	삼 락	장 등	1	안	터	
			2	석 가 촌		
		구 곡	1	공	꼴	
			2	지 장	꼴	
소 계	4	16	31			
동 향	대 량	상 양 지	1	외 양 지		
			2	내 양 지		
			3	양 지		
		하 양 지	1	시	지	
			2	후 양 지		
			3	중 양 지		
		창 촌	1	창	촌	
			2	대	촌	
		보 촌	1	보	촌	
	신 송	외 유	1	외	유	

음 면 별	리 명	행 절 리	반 명	관	활	구
				내	유	
동 향	신 송	내 유	1	내	유	
			2	중	유	
		호 천	1	호	천	
		고 부	1	고	정	
			2	부	곡	
		수 침	1	수	침	
성 산	상 향	1	상 향			
	하 향	1	하 향			
	섬 계	1	섬 계			
	장 전	1	장 전			
자 산	상 노	1	상 노			
	중 노	1	중 노			
	하 노	1	하 노			
		2	내 노			
	후 고 산	1	후 평			
		2	고 산 동			
	용 암	1	상 용 암			
		2	하 용 암			
	대 야	1	상 대			
		2	하 대			
능 금	상 능	1	상 능			
		2	중 능			
	하 능	1	외 능 길			
		2	내 능 길			
	추 동	1	상 촌			
		2	하 촌			
	외 금	1	외 금			
		2	중 금			
	내 금	1	내 금			
		2	신 금			
학 선	새 울	1	중 신			
		2	하 신			
	숲속마을 새울터	1	숲속 마을 새 울 터			

음 면 별	리 명	행 절 리	반 명	관	할 구
				역	
동 향	학 선	<u>봉 곡</u>	1	봉	곡
			2	학	곡
		<u>을 곡</u>	1	을	곡
소 계	6	28	46		
상 전	갈 현	중 기	1	중	기
	주 평	원 주 평	1	원	주 평
		회 사	1	상	담
			2	하	담
		문 화	1	문	화
		교 동	1	교	동
		지 사	1	지	사
		원 가 막	1	내	가 막
			2	외	가 막
		후 가 막	1	후	가 막
수 동	원 수 동	1	원	수	동
	외 송	1	외		송
	내 송	1	상		뜸
			2	하	뜸
월 포	금 지	1	방	죽	담
		2	구	하	촌
		3	금		단
		양 지	1	양	지
구 룽	금 당	1	금		당
	세 동	1	세		동
용 평	신 연	1	신		연
	대 구 평	1	대	구	평
소 계	6	17	22		
백 운	백 암	번 암	1	상	촌
			2	하	촌
	원 촌	1	원		촌
			2	시	장 촌
			3	점	촌
	중 백	1	중		백
	상 백	1	외		촌
		2	내		촌
	백 운 동	1	백	운	동

음 면 별	리 명	행 정 명 리	반 명	관	할	구
				원	동	창
백 운	동 창	동 신	1	원	동	창
			2	신		리
		석 전	1	동		춘
			2	서		춘
		무 등	1	무		등
		화 산	1	상		춘
			2	하		춘
		은 번	1	은		안
			2	번		덕
평 창	평 가	1	양		지	
			2	음		지
			3	가		전
		상 동	1	상		평
			2	동		평
		정 송	1	정		천
			2	양		지
			3	송		림
노 촌	원 노	1	원		노	
			2	성		송
		신 마	1	신		기
			2	마		치
		미 비	1	미	비	
		하 미	1	하		미
운 교	원 운	1	원		운	
			2	당		산
		원 산	1	하	원	산
			2	상	원	산
			3	지		동
		주 천	1	주		천
			2	금		동
		신 전	1	신		전
덕 현	원 덕	1	원		덕	
		상 서	1	상		덕
			2	서		촌

음 면 별	리 명	행 점 명 리	반 명	관 할 구 역
백 운	덕 현	윤 기	1	윤 기
		동 산	1	동 산
		내 봉	1	내 동
			2	봉 서 촌
남 계	남 퇴	1	원 남 계	
		2	분 퇴	
	오 정	1	상 촌	
		2	하 촌	
반 송	원 반	1	동 촌	
		2	서 촌	
	두 원	1	두 원	
		2	점 촌	
신 암	임 신	1	임 하	
		2	판 전	
		3	원 신 암	
	대 유	1	대 전	
		2	유 동	
소 계	9	32	60	
성 수	외 궁	원 외 궁	1	상 외 궁
			2	원 외 궁 상
			3	원 외 궁 하
	안 평	1	안 평	
		2	시 장	
	신 고	1	신 리 상	
		2	신 리 하	
		3	점 촌	
		4	고 미 동	
도 통	음 수 동	1	광 음	
	중 평	1	음 거	
		2	양 지	
	산 주	1	음 지	
		2	양 지	
	원 도 통	1	원 도 통	
	지 동	1	목 동	

음 면 별	리 명	행 절 리	반 명	관	할	구
성 수	도 통	지 동	2	상	지	
			3	하	지	
	좌 포	산 수 동	1	산	수	동
		내 좌	1	내	좌	
		봉 좌	1	상	좌	
			2	하	좌	
		원 좌	1	상	원	
			2	하	원	
		양 화	1	상	양	화
			2	하	양	화
		증 자	1	증	자	
중 길	오 암	1	내		촌	
			2	외		촌
		증 마	1	상	증	근
			2	하	증	근
			3	마		치
			4	사	기	점
	달 길	1	상		달	
			2	중		달
			3	하		달
용 포	반 용	1	운		수	
			2	반		용
	포 동	1	상		촌	
			2	하		촌
	송 촌	1	송		촌	
좌 산	원 좌 산	1	하		촌	
			2	신		촌
			3	상		촌
			4	중		촌
	가 수	1	상	가	수	
			2	중	가	수
			3	하	가	수
	상 기	1	송		기	

음 면 별	리 명	행 정 명 리	반 명	관	할	구
					역	
성 수	좌 산	상 기	2	상		춘
			3	중		터
	신 기	<u>원 신 기</u>	1	원	신	기
			2	내		곡
		<u>평 지</u>	<u>1</u>	평		지
	구 신	원 구 신	1	원	구	신
		장 성	1	장		성
		염 북	1	상	염	내
			2	상	염	외
			3	하		염
		시 동	1	시		동
소 계	8	<u>29</u>	60			
마 령	평 지	<u>솔 안</u>	1	상		뜸
			2	중		뜸
			3	하		뜸
		평 산	1	상		춘
			2	중		춘
			3	하		춘
			4	송	내	뜸
		사 곡	1	내		춘
			2	외		춘
		석 교	1	내		춘
			2	외		뜸
		원 평 지	1	소	홍	곡
			2	동	산	춘
			3	외		곡
			4	첫		골
			5	시	기	춘
계 서	방 화	1	산			춘
		2	하			춘
	계 남	1	계			남
		2	아 래			뜸
		3	갈			마
	오 동	1	새			뜸

음 면 별	리 명	행 정 리	반 명	관 할 구
마 령	계 서	오 동	2	외 동
		서 비 산	1	윗 골
			2	원 춘
동 촌	원 동 촌	1	상 촌	
		2	하 촌	
	서 촌	1	서 촌	
	화 금	1	화 전	
		2	금 당	
강 정	원 강 정	1	잣 골	
		2	창 전	
		3	당 산	
		4	서 당 곡	
	월 운	1	월 운	
		2	우 촌	
덕 천	신 덕	1	신 덕	
		2	윗 뜸	
	대 동	1	대 동	
		2	농 원	
	신 동	1	신 동	
		2	방 죽 뜸	
	추 동	1	추 동	
	장 재	1	장 재	
	안 방	1	안 뜸	
		2	외 뜸	
		3	새 마 을	
	판 치	1	널 치	
		2	내 동	
소 계	5	21	49	
부 귀	두 남	원 두 남	1	원 두 남
		삼 봉	1	삼 봉
		회 신	1	회 구 룽
			2	힌 기
수 항	신 기	1	신 기	
		2	댓 골	

음 면 별	리 명	행 절 명	반 명	관	할	구
				하	수	항
부 귀	수 항	하 곡	1	하	수	항
		야 곡	1	야		곡
		대 동	1	상		춘
			2	하		춘
		대 곡	1	음		춘
			2	양		춘
황 금	방 각	방 각	1	방		각
		봉 황 골	1	봉	황	골
		가 치	1	가		치
		진 상	1	진	상	동
		중 수 항	1	상	수	항
			2	중	수	항
거 석	상 거 석	상 거 석	1	상		춘
			2	하		춘
			3	중	거	석
		신 거 석	1	신		평
			2	거	화	동
			3	신		춘
	사 인 암	사 인 암	1	사	인	암
			2	샛		터
	하 금	내	1	내		춘
			2	외		춘
	금 계 곡	금 계 곡	1	금	계	곡
	금 평	금 평	1	금		평
			2	마		곡
오 룡	오 복	오 복	1	오	룡	동
			2	횟		골
			3	다	복	동
	오 산	상	1	상		춘
			2	하		춘
봉 암	원 봉 암	원 봉 암	1	원	봉	암
			2	신		춘
	소 태 정	소 태 정	1	소	태	정
	부 천	부	1	부		천
	미 곡	양	1	양		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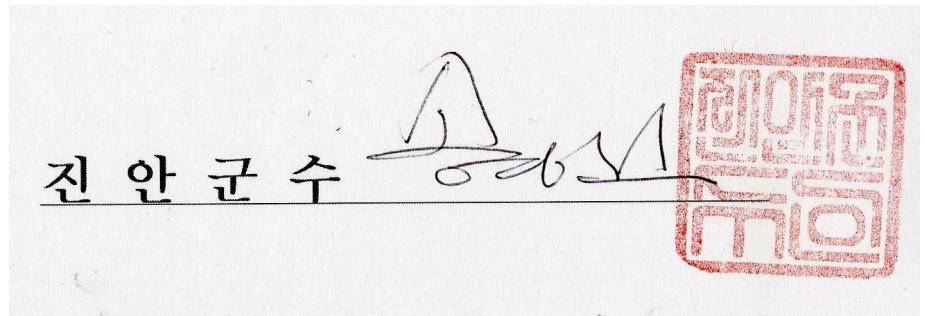
음 면 별	리 명	행 절 명	반 명	관	할	구
				음	춘	
부 귀	봉 암	미 곡	2	음	춘	
	궁 항	신 궁	1	샛	터	
			2	하	궁	
		중 궁	1	중	궁	
		운 장	1	상	궁	
			2	정 수	암	
	신 정	가 정	1	가	정	
			2	숲 거	리	
			3	삼 거	리	
		신 리	1	신	리	
		서 판	1	서	춘	
			2	판	치	
		승 각	1	장	승	
			2	방	각	
세 동	신 덕	1	덕	봉		
			2	신	기	
	적 천	1	적	천		
	큰 터 골	1	큰 터	골		
	원 세 동	1	상	춘		
			2	하	춘	
			3	장	동	
	우 정	1	우	정		
	부 암	1	부	암		
			2	진 안	춘	
소 계	9	38	65			
정 천	봉 학	마 조	1	마	조	
		학 동	1	상 학	동	
			2	하 학	동	
	상 항	1	양	춘		
			2	음	춘	
			3	항 가	동	
	조 림	1	조	립		
			2	신	춘	
	신 양	1	신	남	정	

음 면 별	리 명	행 절 명 리	반 명	관	할	구
				명	덕	
정 천	봉 학	신 양	2	명	덕	
	갈 용	갈 두	1	상	갈	두
			2	하	갈	두
		무 거	1	양		촌
			2	음		촌
		갈 거	1	갈		거
		수 암	1	수		암
모 정	용 정	1	용		정	
			2	불	당	골
			3	새		담
		정 자 동	1	망		덕
			2	모		곡
망 화	이 포	1	이		포	
월 평	상 초	1	상		초	
	하 초	1	하		초	
	원 월 평	1	본		동	
			2	남		동
			3	동		촌
소 계	5	15	27			
주 천	주 양	괴 정	1	신		촌
			2	감		골
			3	요		골
			4	중		촌
			5	상		촌
	양 지	1	양	지		촌
			2	상		촌
			3	미		촌
			4	시		장
신 양	광 석	1	신	광	석	
	성 암	1	성		암	
			2	말		랑
			3	하		보
	금 평	1	하		뜸	
			2	상		뜸

음 면 별	리 명	행 정 명 리	반 명	관	할	구
					역	
주 천	신 양	봉 소	1	남	정	
			2	봉	소	
	운 봉	구 암	1	원 구	암	
			2	신 구	암	
			3	전	춘	
		안 정	1	안	정	
			2	노	적	
		양 명	1	천	황	
			2	상 양	명	
			3	하 양	명	
용 덕	미 적		1	미	적	
		도 촌	1	상	촌	
			2	도	촌	
		대 촌	1	내	촌	
			2	대	촌	
			3	새	을	
		산 제	1	번	영	
			2	성	장	
무 륭	어 자		1	고	암	
			2	대	촌	
			3	양	촌	
		선 암	1	선	암	
		강 촌	1	강	촌	
대 불	삼 거		1	상	거	
		장 등	1	꼴	당	
			2	별	당	
			3	고	상	
		중 리	1	사	금	
			2	중	리	
		개 화	1	개	화	
			2	양	지	
		신 기	1	신	기	
		학 선 동	1	학	선	동
		중 사	1	중	산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진안군 조례 제1991호

##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조례

####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의 균형적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용지”란 마이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업무 용지·상업용지·숙박용지·주거용지·녹지 등 사업계획에 포함 된 토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마이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확정된 각종 시설을 말 한다.
3. “분양용지”란 조성용지 중 일반인에게 분양할 대상용지를 말한다.
4. “상업용지”란 상업행위와 관련된 시설용지를 말한다.
5. “공용용지”란 관광단지 관리, 특산물전시판매장 등 진안군에서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시설용지를 말한다.
6. “공공이용시설”이란 도로·교량·상수도·하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전 기·통신·주차장·공원 등 조성용지의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모든 시설용지를 말한다.
7. “대규모투자자”란 15,000제곱미터 이상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자를 말 한다.

## 2장 토지분양 등

제4조(용지의 공급원칙) ① 용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범위에서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그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③ 분양 우선순위는 이 조례 제8조제2항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④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된 분양계획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의 조성계획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용역비·공사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투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토지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역비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환매조건부 공급) ① 군수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환매방법, 환매대금 등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분양가격의 결정) 조성용지의 분양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분양가격의 재사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분양가격을 재사정할 수 있다.

1. 토지가 분양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있을 때
2. 인근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거나 지정용도가 변경되어 재사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때

제8조(분양방법) ① 용지의 분양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재공고 입찰에 불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 ② 상가시설용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분양하고, 다음 각 호별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추첨에 따르되 1세대당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순위 : 관광단지 개발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의 전부를 제공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와 편입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 단, 편입면적이 대지·임야·전·답 등을 포함 600제곱미터 이상 양도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편입면적이 대지·임

야·전·답 등을 포함하여 600제곱미터 미만 양도한 자 또는 대규모 투자자(대규모투자자는 분양신청 시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순위 : 군 정책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 이주자
4. 제4순위 : 분양계획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제5순위 : 그 밖의 일반인

③ 제1순위를 제외한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별 대상자가 각각 경합하는 때에는 분양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첨일 또는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분양신청) 조성용지의 분양대상자는 분양공고 내용에 따라 분양 신청 하여야 한다.

제11조(분양대금의 납부) ① 조성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며 일시에 수납한다. 다만, 매수인이 일시 납부하는 것이

곧란 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분양예정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예정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잔금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진안군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잔금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자는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중도금 및 잔금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선납 할인 및 자연이자 가산 등) ① 매수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토지 등의 분양대금을 일시납 하는 경우,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분의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토지 등의 분양대금을 계약서에 정한 납입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연일수 및 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를 준용하여 자연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분양 시장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대금의 수납에 따른 연체이자율, 선납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조성용지의 사용 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① 군수는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을 이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하기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은 분양자가 토지대금을 100분의 70 이상 납부하면 군은 토지사용을 승낙 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금 납부 후 토지 사용승낙을 할 수 있으며 사용승낙된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비로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을 건축 착공신고 시까지 진안군 세입세출외현금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분양계약의 해제) ① 군수는 입주 및 분양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용지를 분양 받은 때
2. 공공시설용지,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된 조성용지를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질서를 교란 하는 행위를 한 때
3. 분양 받은 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여 분양목적을 위

## 반한때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기한, 잔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분양신청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와 분양 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때
  6. 입주예정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때.  
다만, 재산 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처분이 불가피한 때
- ② 제1항제6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해약을 원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약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해약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미분양 조성용지의 분양촉진)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때에는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조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중도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중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잔금에 합산납부
2. 중도금 · 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납부
3.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장(관광사업 투자기

업의 지원 등) 제26조, 제29조를 준용하여 지원

4. 제8조제1항1호에 의하여 제3조5호 내지 6호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를 준용하여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다.
5. 최초 분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하여 분양가격을 체감할 수 있다.

### 제3장 분양심의위원회

제16조(분양심의위원회)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지별 · 용도별 분양용지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심의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투자자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성용지의 분양에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실 · 과장급 4명과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4명 이상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및 공무원의 자료제출과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양 및 사업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실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 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8조(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

에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기초구역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진안군 민원봉사과 (☎063-430-241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진안군수

### 1.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구역번호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전체 도면	국가기초구역 확대 도면		
면적	km <sup>2</sup>	주민 수	명

### 2.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현황

구역번호	도로명주소	비고

### 3. 국가기초구역 내 소재한 지번 현황

구역번호	법정동과 지번	다른 기초구역과 걸쳐 있는지 여부(○)	비고

### 4. 국가기초구역 고시일 : 2012. 12. 21.

### 5. 문의

진안군 민원봉사과 (☎063-430-2418)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진안군 보 게재를 생략하며 시·군·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합니다.